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가합5039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희망경제투자조합1호

4. 희망경제투자조합2호

5. 희망경제투자조합3호

6. 바이넥스트특허펀드

7. 비케이동남광역경제권전략산업투자조합제1호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5. 8.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같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896,032원 및 위 금원 중 583,256,77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 (1) 피고 B과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1호,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2호,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3호 사이의 2014. 3.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1호,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2호, 피고 희망경제투자조합3호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398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1) 피고 B와 피고 바이넥스트특허펀드 사이의 2014. 3.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바이넥스트특허펀드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398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피고 B와 피고 비케이동남광역경제권전략산업투자조합제1호 사이의 2014. 3.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비케이동남광역경제권전략산업투자조합제1호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398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박나리

판사윤동현

별지